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86호)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3인
2. 제안연월일 : 2025. 9. 15.
3. 회부연월일 : 2025.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서울, 경기도, 울산 울주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는 경우 그 운전자에게 교통카드 지급 등 교통비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를 보유한 7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시장등이 그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해 시장등이 교통비 지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제138조의2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5세 이상인 사람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한 사람의 교통권 보장을 위하여 교통비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의 절차·방법, 제2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38조의2(비용의 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95조의2에

현행	개정안
	따라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¹⁾에 따르면, 18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조례²⁾를 제정하여 고령운전자를 정의하고,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³⁾

조례를 제정한 181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92개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83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으로, 6개 지방자치단체는 7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1월 2일 검색 기준

2) (예시) 「강릉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광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담양군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조례」, 「화성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등

3)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지원 내용 등 예시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가평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効)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가평군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영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 할 수 있다.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별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

고령운전자 기준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
65세 이상 (83개 지방자치단체)	가평군, 강릉시, 강원특별자치도, 거제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고성군(강원),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양시,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경기), 구리시, 군포시, 금산군,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해군, 담양군,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남구·달서구·달성군·동구·북구·서구·수성구, 동두천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남구·동래구·부산진구·사상구·서구·수영구·영도구·중구, 상주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남구·동대문구·마포구·서초구·성동구·영등포구·용산구·중랑구, 서천군, 수원시, 안동시, 안산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영월군, 오산시, 용인시, 울릉군, 울산광역시 남구·울주군·중구, 원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인제군,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서구, 장흥군, 정선군, 창녕군, 청도군, 춘천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태백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해남군, 화성시
70세 이상 (92개 지방자치단체)	강진군, 경산시, 계룡시, 고령군, 고성군(경남), 고창군, 공주시, 광주광역시 광산구·남구·동구·북구, 군산시, 김제시, 나주시, 남원시, 논산시, 당진시, 대구광역시 중구,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대덕구·동구·유성구·중구, 목포시, 무주군, 문경시, 밀양시, 보령시, 보은군, 봉화군, 부안군, 부여군, 사천시, 산청군, 서산시, 서울특별시 강동구·강북구·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노원구·도봉구·동작구·서대문구·성북구·송파구·은평구·종로구·중구, 세종특별자치시, 순창군, 순천시, 신안군, 아산시, 여주시, 영동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예산군, 예천군, 옥천군, 완주군, 울산광역시 북구, 울진군, 의령군, 의성군, 익산시, 인천광역시 계양구·동구·연수구·중구, 임실군, 장수군,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정읍시, 진안군, 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송군, 청주시, 충주시,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함천군, 홍성군, 홍천군
75세 이상 (6개 지방자치단체)	단양군, 영광군, 울산광역시 동구, 증평군, 태안군, 포항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정부는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을 통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30%의 국고보조금⁴⁾을 지급하고 있음.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는 2025년 기준 239개 지방자치단체임.

2020년 이후 정부의 지원예산은 연간 13억원~27억원 수준이고,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한 인원은 7만명~11만명 수준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명, 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국비 예산	1,392	1,392	1,800	1,800	1,800	2,700	10,884
예산 인원	46,400	46,400	60,000	60,000	60,000	90,000	362,800
반납자	76,002	83,997	112,942	112,896	114,436	68,657	568,930
참여 지방 자치단체 수	132	166	150	189	220	239	

자료: 경찰청

개정안을 통해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⁵⁾하는 경우 교통비

4) (예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운전자 1인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지방비 예산 7만원, 국비예산 3만원으로 지원함.

5) 현행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効)시킬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운전면허 취소사유

지급, 교통수단 제공 등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7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증 반납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교통비 지급 등의 지급 대상이 되는 운전자의 연령을 75세로 설정하고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령운전자의 기준인 65세, 70세 및 75세 중 가장 높은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신설이 현행 조례와 충돌하지 않으므로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추진에 제한을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사업효과 측면에서는 고령운전자의 기준 연령을 하향하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참고로,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취소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에서는 거주지, 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비상제동장치등이 탑재된 차량의 운전면허만 허용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⁶⁾

경찰청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에도 65세

로 정하고 있음.

- 6)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역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반면허에 부적격한 경우 기간이나 시간 등을 제한하는 한정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 2022년 비상제동장치 등이 탑재된 차량용 한정 면허를 신설한 사례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송림, “고령자 운전면허 관리제도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실차주행 평가와 조건부 면허를 중심으로”, 2023년, 이슈와 논점 제2060호.

관련 언론보도로는 머니투데이 2024년 7월 2일 기사 ““어르신, 운전은 거주지서만 하세요”…해외 ‘고령 운전’ 이게 달랐다” 등이 있음.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원금을 제공하는 지자체 대상 국비 보조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보조 사업의 취지 등에 맞추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 6788-5345